서울특별시 미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김광현】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 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2) 민간위원 자격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안 제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 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변호사"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제9조1)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 특히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구체화는 법관의 모호한 사전적 의미를 해 소하여 전무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¹⁾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